

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4-6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4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(안 제2조)

나.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)

다.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(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용한다.

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.

제3조(세입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~20% 해당액
3.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
4.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5.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

제4조(세출)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.

1.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2.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3.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한 경비

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는 동두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